

서울특별시의회
제294회 임시회

의안 번호	1481
----------	------

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5. 7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I .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¹⁾

- 「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」은 서울특별시장이 '20년 5월 4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
-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

II .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

-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0조 7,401억원 대비 4.1%, 1조 6,738억원을 증액한 42조 4,139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

〈표 2-1〉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기정예산			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 대비 증감액	증감률
	①=②+③	1회 추경 ②	간주처리 ③			
	①	②	③	④	⑤=④-①	⑤/①
총 계 규 모	40,740,179	40,307,734	432,445	42,413,980	1,673,801	4.1
일 반 회 계	28,033,991	27,624,583	409,408	30,340,378	2,306,387	8.2
특 별 회 계	12,706,188	12,683,151	23,037	12,073,602	△632,586	△5.0

1)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

- **세입예산** 중 **일반회계**는 2조 3,063억 8,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,
 - ①'1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중 4,24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요청하고, ②국고보조금 1조 7,328억 8,600만원, ③예수금수입(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) 1,500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하고, ④모집공채(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지방채) △10억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
 - **특별회계**는 △6,325억 8,6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바,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목에 대해 증·감 조정을 요청한 것임
- **세출예산**은 기정예산(40조 7,401억원 7,900만원) 보다 4.1%, 1조 6,738억원 증액편성 요청한 바,
 - **일반회계**의 경우,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(△1,146억원) 등 420개 세부사업에 대해 △5,191억 2,0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하고,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(2조 1,062억 8,100만원) 등 10개 세부사업에 대해 2조 8,255억 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, 금번 추경을 통해 2조 3,063억 8,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
 - **특별회계**의 경우, △6,325억 8,6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78개 세부사업 △6,399억 9,0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하고, 1개 세부사업 74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

Ⅲ . 세입예산 관련 검토

1.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

(1) 지난해회계연도 잉여금에 대한 세입처리

-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, '1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결산상 잉여금중 ①**순세계잉여금** 1,245억원과 ②**법정잉여금** 3,000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
 - '19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발생할 결산상 잉여금은 2조 3,044억 3,300만원이나 자치구·교육청·타회계 진출, 감채기금 적립 등 법정전출을 차감한 가용재원은 5,992억 7,400만원으로 확인됨
-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, 전년도 세입·세출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어 동 **순세계 잉여금** 및 **법정잉여금**의 결산전 이입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
- 이에 따라 지난 3월, '20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결산상 잉여금중 3,429억 1,600만원을 세입예산중 **순세계잉여금**으로 편성한 바 있으나, 금번 제2회 추경을 통해 추가적으로 1,245억원을 **순세계잉여금**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
- **법정잉여금**의 경우에는 '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통세 초과수입에 따른 법정의무경비 정산분(1조 1,058억 8,500만원)중 3,00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
 -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경비인 **조정교부금**중 일부를 금번 추경을 통해 자치구로 교부하고자 결산전에 미리 세입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

(2)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처리

-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**국고보조금**의 경우,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(5조 5,343억 3,500만원)보다 31.3%, 1조 7,328억 8,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
 - 중앙정부의 내시와 정부추경 등에 따라 **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**(1조 7,833억 1,600만원 증액), **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**(73억 5,900만원 증액), **특수고용,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**(30억원 증액)에 교부될 국비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,
 - **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-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**(△429억 6,900만원 감액), **전기차 보급**(△64억원 감액), **자활장려금**(△26억 1,500만원 감액) 등 18개 사업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

〈표 3-1〉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증·감편성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기정예산	증 · 감	추경(안)	주 요 증 감 내 역
국고보조금등 ^{주1)}	5,779,119	1,732,886	7,512,005	
				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,783,316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7,359 특수고용,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3,000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-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△42,969 전기차 보급 △6,400 자활장려금 △2,615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△1,830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△1,701 도시숲(바람길숲) 조성 △1,497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△1,129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△810 자활근로사업 지원 △735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△443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(시직숙) △274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△92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△87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△76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△62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△33 성평등 청년 네트워크 지원사업 △25 산불방지대책(경상) △5
국고보조금	5,534,335	1,732,886	7,267,222	

주1) 국고보조금등의 세입과목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기금의 기정예산 포함

(3) 지방채에 대한 감액조정

-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**지방채**의 경우,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(295억원)보다 △3.3%, △10억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**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지방채**를 당초(60억원)보다 △10억원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

〈표 3-2〉 일반회계 지방채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세 부 내 역	기 정 예 산	감 액	추 경 (안)
계	29,500	△1,000	28,500
스 페 이 스 살 립 건 립 지 방 채	23,500	-	23,500
G 벨 리 문 화 복 지 센 터 조 성 지 방 채	6,000	△1,000	5,000

- 아울러 세입예산에 당초 편성된 지방채 발행액을 감액조정할 경우, 예산총칙중 공채발행 및 차입금에 대한 내용도 연동되어 수정이 필요한 바, 금번 추경안의 예산총칙에 동 사항이 반영되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
 - 서울시는 지난 '20년도 본예산 편성시 지방채 발행한도액보다 초과 발행 계획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한도초과 승인까지 받은 바, 예결특위 심사시 향후 지방채를 발행할 추가적인 여력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채 상환 및 재원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나
 -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채발행 및 차입금에 대해 일반회계 △10억원을 포함하여 △3,468억원을 감액조정 요청하고 있어, 향후 지방채에 대한 최소한의 추가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됨

〈표 3-3〉 예산총칙 변경 사항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명	당초예산	제회추경	감 액	세 부 내 역
계	2,999,600	2,652,800	△346,800	
일 반 회 계	29,500	28,500	△1,000	·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지방채 △10억원
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	999,800	902,600	△97,200	·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△239억원 · 동북선 경전철 건설(민자) △733억원
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	158,600	151,100	△7,500	· 동부간선도로 확장(녹천교~의정부시계) △35억원 ·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△40억원
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	865,000	865,000	-	
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	902,400	670,400	△232,000	· 풍납토성 지방채 발행 △236억원 · 동부간선도로 확장(월계1교~녹천교) △25억원 · 신림~봉천터널 건설 △30억원 ·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△36억원 · 남부순환로(개봉사거리) 평탄화 △60억원 · 양재대로 구조개선 △33억원 · 성산대교 성능개선 △30억원 ·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△1,800억원 ·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 △70억원
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	44,300	35,200	△9,100	·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지방채 △26억원 ·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△25억원 · 아동·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지방채 △30억원 ·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지방채 △10억원

(4) 예수금수입에 대한 증액조정

-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**예수금수입**의 경우,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,500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,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1,500억원을 세입조치하는 것인 바,
 -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는 “기금에서 일반, 특별회계,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합·폐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”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,
 - 동 사례의 경우, 기금중 **기타회계전출금**이 아닌 **예수금수입**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벗어난 운용사례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

2.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

(1) 지난해회계연도 잉여금에 대한 세입처리

- 특별회계의 경우,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'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하는 결산상 잉여금중 1,809억 9,000만원을 세입과목인 **순세계잉여금**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
 -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도 세입·세출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어 동 **순세계잉여금**의 결산전 이입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
- 다만,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'1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(1,240억 3,000만원)에 대해 이미 ①본예산과 ②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**순세계잉여금**으로 세입조치 하였고, ③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서도 **순세계잉여금**을 1,000억원 증액한 1,363억 100만원으로 세입조치 요청한 바, 이 경우 결산상 잉여금보다 122억 7,100만원을 초과 편성하게 되나
 - 동 사례는 회계간·계정간 전출 등에 따른 일종의 착시계상으로 사료되어 금번 추경 이후, 당해 회계연도중 추가로 예정된 추경을 통해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

〈표 3-4〉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 편성요청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회계명	19회계연도 결산상잉여금 ㉠	20년도 세입예산				순세계잉여금 잔액 ㉠ - ㉡
		본예산	제1회추경 ㉠	증액 ㉡	제2회추경 ㉢=㉠+㉡	
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	59,915	-	5,273	23,867	29,140	30,775
교통사업계 특별회계	124,030	27,160	36,301	100,000	136,301	△12,271
도시개발계 특별회계	48,935	31,230	31,230	15,000	46,230	2,705
의료급여기금계 특별회계	5,199	2,698	2,698	2,500	5,198	1
소방안전계 특별회계	28,623	2,822	2,822	17,123	19,946	8,677

(2) 회계간 전입에 따른 세입편성

-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**기타회계전입금**의 경우,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(3조 5,740억 1,600만원)보다 $\Delta 9.6\%$, $\Delta 3,452$ 억 7,6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금번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코로나19로 사업이 미추진 되거나 지연된 세부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함에 따라 회계간 전입금을 조정한 것으로 검토됨
-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, 일반회계 법정전입금(유가보조금)을 당초보다 $\Delta 773$ 억 9,600만원 감액조정 요청하고,
-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, 일반회계 법정전입금을 당초보다 $\Delta 1,146$ 억원 감액편성 요청된 바, 관련 법령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지역분의 70%분의 일부인 것으로 사료되어 감액 편성에 따른 향후 대안도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
〈표 3-5〉 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 편성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명	과 목	기정예산	감 액	추 경 안	내 역
계		3,574,016	△345,276	3,228,739	
도시철도건설 사 업 비	기타회계 전 입 금	38,900	△38,900	0	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△38,900
교 통 사 업	기타회계 전 입 금	666,254	△95,396	570,858	일반회계 일반전입금(버스재정지원 등) 일반회계 법정전입금(유가보조금) △18,000 △77,396
광역교통시설	기타회계 전 입 금	30,400	△30,400	0	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△30,400
도 시 개 발	기타회계 전 입 금	1,109,061	△114,600	994,461	일반회계 전입금 - 재산세 징수액중 도시지역분 △114,600
균 형 발 전	기타회계 전 입 금	125,400	△13,601	111,798	일반회계 전입금 △13,601
의료급여기금	기타회계 전 입 금	742,308	△20,000	722,308	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△20,000
소 방 안 전	기타회계 전 입 금	861,693	△32,379	829,314	일반회계 전입금 △32,379

(3) 지방채에 대한 감액조정

-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채의 경우, 4개 특별회계, 17개 세부사업에 대해 △3,458억원을 감액편성 요청하고, 이와 연동하여 예산총칙 제4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도 수정하여 제출하였음

〈표 3-6〉 특별회계 지방채 편성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명	세 부 내 역	기정예산	감 액	추경(안)
계		852,800	△345,800	507,000
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	진접선 차량기지 건설	62,500	△23,900	38,600
"	동북선 경전철 건설(민자)	77,500	△73,300	4,200
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	동부간선도로 확장(녹천교~의정부시계)	86,000	△3,500	82,500
"	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	4,000	△4,000	0
도시개발 특별회계	풍납토성 지방채 발행	23,600	△23,600	0
"	동부간선도로 확장(월계1교~녹천교)	19,400	△2,500	16,900
"	신림 ~ 봉천터널 건설	26,000	△3,000	23,000
"	서울제물포터널 건설	8,000	△3,600	4,400
"	남부순환로(개봉사거리) 평탄화	10,000	△6,000	4,000
"	양재대로 구조개선	19,300	△3,300	16,000
"	성산대교 성능개선	34,000	△3,000	31,000
"	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	430,000	△180,000	250,000
"	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	18,000	△7,000	11,000
균형발전 특별회계	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지방채	4,000	△2,600	1,400
"	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	2,500	△2,500	0
"	아동·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지방채	3,000	△3,000	0
"	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지방채	25,000	△1,000	24,000

(4) 예수금수입에 대한 감액조정

-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**예수금수입**을 기정예산(2,459억원) 대비 $\Delta 40.6\%$, $\Delta 1,000$ 억원 감액조정한 1,459억원으로 편성 요청 한 바,
 - 당초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일종의 '잠정적으로 차입'하고자 한 1,000억원을 동 특별회계로 세입처리 하지 않고, 코로나19에 따른 제2회 추경의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편성으로 사료됨

IV. 세출예산 관련 검토

1. 세출예산 증액 관련

(1) 증액 총괄

-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, 총 11개 세부사업에 2조 8,329억 1,100만원(국비 1조 7,936억 7,600만원, 시비 1조 392억 3,500만원)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
 - **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**을 포함한 8개 사업에 2조 4,755억 5,100만원(국비 1조 7,863억 1,600만원, 시비 6,892억 3,500만원)을 신규 편성 요청하고,
 - **조정교부금**을 포함한 2개 계속사업에 시비 3,500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하며, **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**에 추가 교부된 국비 73억 5,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

〈표 4-1〉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편성 사업

(단위 : 백만원)

실·본부·국	세부사업	기정예산	증액		추경(안)	비고	
			국비	시비			
행정국	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	(x400,000) 400,000	(x1,783,316) 2,106,281	1,783,316	322,965	(x2,183,316) 2,506,281	신규
노동민생정책관	서울시 자영업자 생존 자금 지원	(x-) -	(x-) 325,586	-	325,586	(x-) 325,586	"
"	특수고용,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	(x-) -	(x3,000) 9,100	3,000	6,100	(x3,000) 9,100	"
경제정책실	코로나19 위기 도시제 조업 긴급사업비 지원	(x-) -	(x-) 20,000	-	20,000	(x-) 20,000	"
도시교통실	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 업체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	(x-) -	(x-) 7,404	-	7,404	(x-) 7,404	"
문화본부	공연업 긴급 희생 지원	(x-) -	(x-) 5,000	-	5,000	(x-) 5,000	"
관광체육국	서울형 호텔업 위기극 복 프로젝트 지원	(x-) -	(x-) 2,000	-	2,000	(x-) 2,000	"
시민건강국	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 센터 건립	(x-) -	(x-) 180	-	180	(x-) 180	"
행정국	조정교부금	(x-) 3,286,852	(x-) 300,000	-	300,000	(x-) 3,586,852	계속
노동민생정책관	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	(x-) 12,665	(x-) 50,000	-	50,000	(x-) 62,665	"
복지정책실	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(※제1회 추경 신규사업)	(x171,205) 171,205	(x7,359) 7,359	7,359	-	(x178,564) 178,564	국비 추가

(2) 세부사업별 검토

□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(사업별설명서, p.255)

-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**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**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고자 **출연금**을 기정예산(126억 6,500만원)보다 500억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
- 출연금의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“미리”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관련 동의안을 지난 5월 4일, 의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됨

□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(사업별설명서, p.263)

-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**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**은 '19년도 기준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서울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고자 **기금전출금** 3,255억 8,6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
- 우리 시의회는 금년 4월,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제안 및 의결하여 '자영업자 생존자금'에 대한 지원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음
- 우리 시의회가 마련한 지원근거에 따라 서울시가 계획하는 **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**은 약 41만개 업체에 대해 월 70만원씩 2개월간 '자영업자 생존자금'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하는 것인 바,
 - ① 동 사업을 통해 약 23만개 업체의 '자영업자 생존자금' 소요분 3,255억 8,6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여 지원하고, ② 기존 **재난관리기금**에서 약 18만개 업체의 '자영업자 생존자금' 소요분 2,5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사업으로 '자영업자 생

존자금'에 총 5,755억 8,600만원을 집행 계획한 것으로 확인됨

□ **조정교부금** (사업별설명서, p.1241)

-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**조정교부금**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기정 예산(3조 2,868억 5,200만원)보다 3,000억원 증액편성한 바,
 - 관련 조례에 따라 '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하는 보통세 예·결산 차액(1조 8,556억 6,500만원)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분(4,193억 5,700만원)이 발생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3,000억원을 우선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
- 조정교부금 정산분의 경우, '1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법정경비에 해당하는 바, 법정경비 정산분은 결산이후 교부되거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대응 편성에 한계가 있는 자치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편성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사료됨

□ **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** (사업별설명서, p.1245)

-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**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**은 2차 정부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기정예산(4,000억원) 보다 2조 1,062억 8,100만원(국비 1조 7,833억원, 시비 3,229억 8,100만원)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
-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되는 **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**은 서울시 전체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(1인 40만원, 2인 60만원, 3인 80만원, 4인 이상 100만원)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·체크카드, 서울사랑상품권, 선물카드 등으로 지급수단을 다양화하여 지원하는 것인 바,
 - ① 지원 대상가구 70%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1조 6,055억원은 국비·시비·구비를 매칭(70:20:10)하여 지원하고, ② 나머지 30%에 대한

긴급재난지원금 1조 543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'긴급재난지원금'은 총 2조 6,598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확인됨

2. 세출예산 감액 관련

-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, 총 498개 세부사업에 △1조 1,591억 1,000만원(국비 △607억 8,900만원, 시비 △1조 983억 2,100만원)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
 - 일반회계의 경우, **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**을 포함한 420개 세부사업에 △5,191억 2,000만원(국비 △607억 8,900만원, 시비 △4,583억 3,100만원)을 감액편성 요청하고,
 - 특별회계의 경우, **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(시공원)**을 포함한 78개 세부사업에 △6,399억 9,000만원(전액 시비)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

〈표 4-3〉 추가경정예산안 감액편성 사업

(단위 : 백만원)

회계명	세부 사업수	기정예산			감액			추가경정예산안		
		계	국비	시비	계	국비	시비	계	국비	시비
총 계	498	9,363,508	1,304,524	8,058,983	△1,159,110	△60,789	△1,098,321	8,204,397	1,243,735	6,960,662
일 반 회 계	420	5,382,633	405,035	4,977,597	△519,120	△60,789	△458,331	4,863,512	344,246	4,519,266
특 별 회 계	78	3,980,875	899,489	3,081,385	△639,990	-	△639,990	3,340,884	899,489	2,441,395
도시철도건설 사업특별회계	5	180,967	22,297	158,670	△112,233	-	△112,233	68,734	22,297	46,437
교통사업 특별회계	1	273,312	-	273,312	△102,800	-	△102,800	170,512	-	170,512
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	4	255,774	39,013	216,761	△37,900	-	△37,900	217,874	39,013	178,861
도시개발 특별회계	37	940,506	74,927	865,579	△331,599	-	△331,599	608,906	74,927	533,979
균형발전 특별회계	15	138,653	12,194	126,459	△22,701	-	△22,701	115,951	12,194	103,757
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1	1,497,708	751,052	746,655	△17,500	-	△17,500	1,480,208	751,052	729,155
소방안전 특별회계	15	693,953	5	693,948	△15,255	-	△15,255	678,698	5	678,692

○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편성 요청된 498개 사업 중에는 '20년도 예산심사시 의결을 통해 확정된 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,

- 의회의 예산심사를 통하여 당해연도 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소요예산을 회계연도중 감액조정할 경우, 행정의 계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편성 요청된 다수 사업에 대해 감액조정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V.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관련

- **성인지 예산서**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 첨부되어야 하고, **성과 계획서**도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서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
 - 관련 법령의 단서조항에 따라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됨

□ 검토보고 작성

수석전문위원	엄	지	운
전문위원	조	도	형
입법조사관	강	민	수
입법조사관	김	성	진